

예산회계법시행령 입법예고

재무부는 공사계약의 분할발주금지제도를 폐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행보다 2배로 연장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공사계약의 분할발주금지제도 폐지

재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분할발주금지제도를 폐지, 공사현장여건과 상황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발주관서의 장이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했을 때의 공사품질 향상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건설관련 부조리 제거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수차에 거쳐 관계요로에 진정 건의했었다.

그 결과 재무부는 UR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향상과 국내 건설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확립하여 공사의 분할발주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 (공사의 분할발주금지)를 삭제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 12월30일자로 입법예고했던 것이다.

그밖에 재무부가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지원을 위해 공사도급업체중 반드시 공사가 시행되는 그 지방의 업체 1개사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도급을 의무화했는데 이 규정은 '96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도록 했다.

[2] 세출예산의 연도말 이월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정가격 1백억 이상의 교량·고속도로 등 단기발주, 대안입찰, PQ적용대상 14개 공종의 공사는 입찰공고만으로 이월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3] 시공감리의 전문감리회사 위탁범위를 계약금액의 50억 이상의 토목, 건축공사로 하는 건술기술관리법령의 규정을, 하자보증기간을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이상의 아파트 공사의 경우 10년까지 연장하는 주택관련법 및 건설업법의 규정을 이 시행령에 받아들였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93조 (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0. (생 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93조 (지명경쟁에 의할 경우) ① 1-10. (현행과 같음) 1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 (견적서의 제출요구) (생 략) 〈신 설〉 제6절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지급	제108조 (견적서의 제출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 6절 계약이행의 검사와 대가지급	- 행정쇄신위원회로 부터 제도개선 건의 ('93. 8. 18)
제114조 (검사) ① · ④ (생 략)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신 설〉	제114조 (감독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검사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⑥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각호의 계약을 말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2.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8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 법 제80조 개정에 따른 보완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책임감리원에 대해서도 공사중지 및 재시공명령권 부여

법령과 고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26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이상 10년 이하	-법 제84조 개정에 따른 보완	
제136조 (국고금출납보고서의 제출) 한국은행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의 출납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개선 건의	
제152조 (사업집행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생략) 〈신설〉	제152조 (사업집행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경과후 다음달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매회계년도 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결산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으나 국가채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분기 별로 국가채무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후단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역공동도급의무화 제도는 '97. 1. 1부터 GATT 정부조달 협정이 발효되므로 96. 12. 31까지만 운용 ○'94~'96 동안 동제도를 운용함으로서 지방중소기업에의 기술이전 및 경험취득 기회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킴.

■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6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에 있어서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46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8조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2. 예정가격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70조 (연대보증인)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자와 영 제81조제2항에 규정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그 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상 경과된 자이어야 한다.	제70조 (연대보증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연대보증인은 당해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93. 9. 23)에 따른 조문정리
③~⑦ (생략)	③~⑦ (현행과 같음)	
제72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2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호의 공증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증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증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 구조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 : 5년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의 공사 : 4년 3. 관개수로·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	제72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1. 구조물,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된 5층이상 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10년 2. 8년 3. 공동주택(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은	- 예산회계법개정에 따른 보완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종전보다 2배로 연장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한다. 이하 같다)과 일반건축물중 교정시설 (수용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의 공사 : 3년	제외한다) 6년	
4.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 일반건축 (공동주택외의 건축을 말하며, 교정시 설을 제외한다) · 부지정지 · 조경시설 물설치 · 조경식재(나무의 높이가 4미 터이상이거나 흉고지름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수목류의 식재의 경우에 한한다) 등의 공사 : 2년	4. 4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사 : 1년 ② (생략)	5. 1~3년 ② (생략)	
제78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80조제2항 및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 는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8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 인)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 예산회계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별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79조 관련) 1. (생략) 2. 6월이상 1년6월미만의 범위안에서 입 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사. (생략) 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사”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생략)	【별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 79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가-사. (현행과 같음) 아. 체결 또는 이행하지 3.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 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